

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1. 10. 5
내 무 위 원 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9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9월 26일

다. 상정일자 : 제71회 임시회

○ 제3차 내무위원회(1991. 10. 4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곽소열)

가. 제안이유

-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내무부로부터(지기 01210-9023, '91. 9. 18) 도여성회관의 기능이 보장됨에 따라
-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“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”으로 되어 있는 관장의 직종 및 직급을 “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”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관장 직종 및 직급을 상향 조정(조례 제4조 제1항)

현	행	개	정
	•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	•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민귀식)

- 지난 1991년 9월 1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여성회관장의 직종 및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되었고
-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등 여성회관 기능의 확대추세를 감안할 때 여성회관장의 직급 상향조정은 바람직함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구조문대비표